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관련 검 토 보 고 서

## 1. 소 관

가.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나.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

## 2.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2000년 6월 4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 6.20)

### 3. 결산 및 예비비지출개요

#### 가.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입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이월
계	98,583	133,877	137,378	134,437	2,940	27	2,913
일반 회계	91,135	120,212	123,266	120,552	2,712	27	2,685
특별 회계	7,448	13,665	14,112	13,884	228		228

※ 특별회계(7) :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차장  
관리

※ 예산현액은 '99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임.

##### ○ 세출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98,583	133,877	108,494	105,762	19,955	8,160
일반회계	91,135	120,212	99,669	96,941	17,301	5,969
특별회계	7,448	13,665	8,825	8,821	2,654	2,191

○ 결산상 잉여금처리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134,437	105,762	12,549	6,418	986	387	8,332
일반 회계	120,553	96,942	12,082	4,454	765	380	5,930
특별 회계	13,884	8,820	467	1,964	221	7	2,402

○ 예산전용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전용감액		전용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720,652	17	219,604	17	219,604
일반회계	10,720,652	17	219,604	17	219,604
특별회계					

○ 계속비

① 사업명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불용액	불용액
'99	1,909	493	2,402	1,705	16	186
'98	3,250	1,261	4,511	4,017	493	
'97	1,160	2,943	4,103	2,841	1,261	
'96	2,418	1,717	4,135	1,192	2,943	0.4
'95	1,392	1,199	2,591	859	1,717	5

② 공설묘지 조성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년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불용액	불용액
'99	400	558	958	193	764	
'98	221	501	722	164	558	
'97	302	200	502		501	
'96	200		200		200	

③ 방림상수도 시설비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년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불용액	불용액
'99	748		748	526	221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24	41,447,756	19,064,083	19,955,231	
일 반	소 계	113	36,159,573	16,431,659	17,301,313	
	명시이월	65	20,562,436	6,423,078	12,082,324	
회 계	사고이월	44	14,638,909	9,815,194	4,454,148	
	계속비이월	4	958,228	193,387	764,841	
특 별	소 계	11	5,288,183	2,632,424	2,653,918	
	명시이월	4	548,000	80,500	467,500	
회 계	사고이월	6	3,991,987	2,025,493	1,964,654	
	계속비이월	1	748,196	526,431	221,764	

○ 채무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99 년 도		'99년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25,031,936	4,557,376	2,250,270	27,339,042	2,307,106
일반회계	5,201,720	939,575	738,143	5,403,152	201,432
특별회계	19,830,216	3,617,801	1,512,127	21,935,890	2,105,674

○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건 수	'99 년 도		'99년도말 현재액	전 년 대 비 증 감
		발 생	소 멸		
계	3	901,484	651,531	4,444,152	249,953
일반회계					
특별회계	3	901,484	651,531	4,444,152	249,953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99 년 도		'99년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56,723,895	2,523,488	102,552	59,144,831	2,420,936
행정재산	21,733,282	2,523,488		24,256,770	2,523,488
보존재산	0			0	
잡종재산	34,990,613		102,552	34,888,061	△102,552

## ○ 기 금

(단위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99 년 도		'99년도말 현 재 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541,508,353	316,529,960	11,000,000	847,038,313	305,529,960
재해대책 기 금	108,767,040	79,470,500		188,237,540	79,470,500
재난관리 기 금	15,200,000	18,499,360		33,699,360	18,499,36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13,682,550	10,000,000	11,000,000	112,682,550	1,000,000
생활보호 기 금	19,535,922	1,578,820		21,114,742	1,578,820
노인복지 기 금	284,322,841	106,981,280		391,304,121	106,981,280
장애인복지 기 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나. 예비비지출

(단위 천원)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물설치	47,745	47,745	47,745	0		동계아시아경 기대회홍보물 추가설치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경비병력 야식비	10,000	10,000	10,000	0		동계아시아 경기대회경찰 경비병력 야식비
명예퇴직 수당	23,406	23,406	23,406	0	4.15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	7,326	7,326	7,326	0	7.14	“
프로그램 개발	5,000	5,000	5,000		2000. 2.29	주택용자금 전산화지원
명예퇴직 수당	123,704	123,704	123,704		8.16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수해응급 복구	16,320	16,320	16,320		9.27	수해응급복구 장비임대
수해복구 지원	7,150	7,150	7,150		12.21	도벽복구농기 계부품지원
명예퇴직 수당	38,299	38,299	38,299		10.29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퇴직수당 부담금	269,078	269,078	269,078		11.30	퇴직수당부담 금부족분
명예퇴직 수당	47,506	47,506	47,506		12.07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명예퇴직 수당	24,351	24,351	24,351		12.29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계	619,885	619,885	619,885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예산액은 985억 8,342만원으로

- 세입부분 수납액은 1,344억 3,76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8억 5,421만원을 초과한 13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의 비율에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 세출부분에 전년도 이월금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액은  
1,338억 7,780만원으로 지출액은 79%에 해당되는 1,057억  
6,206만원이며, 이월액은 199억 5,523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일반회계 수납액은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 911억  
3,577만원 대비 132%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억 6,596만원  
으로 예산액의 135%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지방세 징수액은 102억 4,712만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4억 5,100만원대 징수액은 480억  
1,627만원으로 260% 증액하였음. 이는 전년도 이월금 290억  
7,662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 실제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1%의 증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95억 9,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 지방양여금 77억 6,543만원, 국도비 보조금 245억 4,553만원이 전액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의 132%가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로 잉여자금의 고율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와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등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에 기인한 것임
- 미수납액은 29,885건에 27억 1,253만원으로서 사유는 고질 체납이 가장많은15,736건으로 17억 358만원이고, 거소불명이 3억 2,396만원, 무재산 3억 3,80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이 2억 7,428만원, 기타 7,267만원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1,202억 1,239만원에 대하여 969억 4,159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이월액 173억 131만원과 불용액 59억 6,948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액 969억 4,159만원은 일반행정비 189억 8,975만원,

사회개발비 259억 2,582만원, 경제개발비 504억 1,031만원,  
민방위비 2억 5,73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5,832만원임

- 이월액 173억 131만원중 명시이월 120억 8,232만원은 '99가을착수  
받기반정리사업 13억 8,915만원, 의료원 증축 8억 9,468만원,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등 65건임.

사고이월은 총 44건에 44억 5,414만원으로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등임

- 불용액 59억 6,948만원은 예산현액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인  
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억 1,39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103만원, 예산절감 9억 9,709만원, 예산집행잔액 3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만원등임.
- 잉여금은 총 236억 1,184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20억  
8,232만원, 사고이월44억 5,414만원, 계속비 이월이 7억 6,484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8,011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9억3,041만원임.

○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의  
의견에서 제시한 세출분야의 사업비 확보이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 이외에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보아짐.

## 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부분

-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016만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물,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병력 야식지원,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료, 수해복구 농기계 부품지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명예퇴직수당(6건)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음.

##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 수납액 138억 8,420만원은 예산액 74억 4,764만원보다 64억 3,656만원이 많은 186.4%로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 62억 1,776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로 전년도 98.7%에 비하여 0.3%낮아졌음.
  -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1,714만원, 주택사업이 5,136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2,563만원임 등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액은 74억 4,764만원임, 예산성립후 증감분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6억 6,541만원으로 지출액은 64.5%에 해당하는 88억  
2,046만원이고 기타 이월액 26억 5,391만원과 불용액 14억 9,239  
만원으로 되어 있음.

이월액은 전액 상수도 특별회계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가  
11억 5,730만원, 기타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임.

## 마.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관리

### 1) 기 금

-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 자녀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기금의 6종임.
- 1998년말 현재액은 5억 4,150만원에서 1999년도 수입액은 3억  
1,652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100만원으로 차입잔액 8억  
4,703만원임.
- 수입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액임.

### 2) 채 권

- 보유채권 현재액은 98년말 현재 41억 9,419만원에서 99년도에  
9억 148만원이 발생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4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95만원이 증가하였음.

### 3) 채 무

-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98년말 현재 250억 3,193만원에서 99년도에 23억 710만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액이 273억 3,904만원임,

### 4) 공유재산

-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 토지 149,797,000m<sup>2</sup> 518억 8,247만원,
  - 건물 34,550,000m<sup>2</sup> 72억 5,295만원
  - 기타 24건에 9백만원으로

총 591억 4,483만원 상당함.

### 5) 물품 현재액

99년도말 물품현황은 20억 4,1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6,178만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  
3,869만원이 감소하였음.

# 1999회계년도

## 명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검사대표위원            김 완 규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고 영 배

검 사 위 원            송 재 춘

# **1999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감사위원 일동은 평창군의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

## **2. 검사기간 : 2000. 5. 12 - 5. 31(20일간)**

##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김 완 규    : 결산총괄
- 위      원      김 진 석    : 일반회계세입, 재산 및 기금의결산
- 위      원      고 영 배    :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의 결산
- 위      원      송 재 춘    : 일반회계세출, 계속비, 이월비, 금고결산

##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등에 주안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 대조검사

##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절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등에 입각한 적절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 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용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5.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과 같음.

2000년 5월 31일

검사대표위원

김 안 규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고 영 배



검 사 위 원

송 재 춘



평창군수 귀하

# '99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1999년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총괄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8)	119,690,304,000	165,791,306,646	163,719,934,721	37,653,540	2,033,718,385
당해년도 (99)	98,583,421,000	137,378,159,366	134,437,635,710	27,839,920	2,912,683,736

#### 가. 세입결산 개요

'99년도 수납액 134,437,635,710원은 예산액의 136%로서 35,854,214,71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 98년도

- 수 납 액 : 163,719,834,721원 (예산액의 137%)
- 징수결정액 : 165,791,306,646원 (예산액의 139%)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98)	119,690,304,000	43,294,950,621	162,985,254,621	118,729,906,547
당해년도(99)	98,583,421,000	35,294,388,100	133,877,809,100	105,762,061,882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5,294,388,100	8,960,959,974	44,990,028,174	532,572,430	9,163,067,644
19,955,232,020	8,160,515,198	28,675,573,828	387,827,500	8,332,514,308

### 가. 세출결산 개요

(1)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가 감소한 98,583,421,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5,294,388,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3,877,809,100원임.

(2) 지출액은 105,762,061,882원으로 예산현액의 79%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98)	162,985,257	113건 35,294,388	61건 25,252,887	50건 8,989,968	2건 1,051,533	21%
당해년도 (99)	133,877,809	124건 19,955,232	69건 12,549,824	50건 6,418,803	5건 986,605	15%

(3) 불용액은 예산의 6%에 해당하는 8,160,515,19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32,514,308원으로 예산현액의 6.2%임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8)	111,399,586,000	149,161,066,965	147,292,624,925	37,653,540	1,830,788,500
당해연도 (99)	91,135,772,000	123,265,965,801	120,553,433,921	27,839,920	2,684,691,960

#### 가. 세입결산 개요

(1) 수납액은 120,553,433,921원으로 예산액의 132%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65,965,801원으로 예산액의 135%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98년도

- 수 납 액 : 142,292,624,925원 (예산액의 132%)
- 징수결정액 : 149,161,066,965원 (예산액의 134%)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98)	111,399,586,000	34,829,010,961	146,228,596,961	109,238,944,572
당해년도(99)	91,135,772,000	29,076,620,990	120,212,392,990	96,941,593,437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9,076,620,990	7,913,031,399	38,053,680,353	511,691,000	8,465,368,363
17,301,313,800	5,969,485,753	23,611,840,484	380,112,000	5,930,414,684

### 가. 세출결산 개요

- (1) 예산액은 91,135,77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20,212,392,990원임.
- (2) 이월사업비는 총 113건에 17,301,313,800원으로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98)	146,228,597	99건 29,076,621	53건 22,381,621	44건 5,643,467	2건 1,051,533	20%
당해연도 (99)	120,212,393	113건 17,301,313	65건 12,082,324	44건 4,454,148	4건 764,841	14%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연 도 (98)	8,290,718,000	16,630,239,681	16,427,309,796	0	202,929,885
당해연도 (99)	7,447,649,000	14,112,193,565	13,884,201,789	0	227,991,776

#### 가. 세입결산 개요

- (1) 수납액은 13,884,201,789원으로 예산액의 186%이며 징수결정액은 14,112,193,565원으로 예산액의 189%이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98년도

- 수 납 액 : 16,427,309,796원 (예산액의 198%)
- 징수결정액 : 16,630,239,681원 (예산액의 201%)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연 도(98)	8,290,718,000	8,465,939,660	16,756,657,660	9,490,961,975
당해년도(99)	7,447,649,000	6,217,767,110	13,665,416,110	8,820,468,445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217,767,110	1,047,928,575	6,936,347,821	20,881,430	697,699,281
2,653,918,220	2,191,029,445	5,063,733,344	7,715,500	2,402,099,624

가. 세출결산의 개요

- (1) 예산액은 7,447,64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65,416,110원임.
- (2)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에 2,653,918,220원으로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98)	16,756,658	14건 6,217,767	8건 2,871,266	6건 3,346,501		37%
당해연도 (99)	13,665,416	11건 2,653,919	4건 467,500	6건 1,964,655	1건 221,764	19%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수납액	지출액	
총 계	541,508,353	305,529,960	316,529,960	11,000,000	847,038,313
재해대책기금	108,767,040	79,470,500	79,470,500	0	188,237,540
재난관리기금	15,200,000	18,499,360	18,499,360	0	33,699,360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13,682,550	△1,000,000	10,000,000	11,000,000	112,682,550
생활보호기금	19,535,922	1,578,820	1,578,820	0	21,114,742
노인복지기금	284,322,841	106,981,280	106,981,280	0	391,304,121
장애인복지기금	0	100,000,000	100,000,000	0	100,000,000

#### 가. 기금결산 개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8년도 5종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신규 설치된 6종으로서 기금현재액은 98년도 541,508,353원보다 305,529,960원이 증가된 847,038,313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 권

####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98년말 현재액 : 4,194,199,517원에서
- 99년도에 901,484,232원이 발생하여
- 99년도말 현재액은 4,444,152,579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회계별 99년도말 현재액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이행기간도래액		이행기간미도래액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4,444,152,579	759,090,259	1,124,149,150	1,611,688,213	949,224,957
특별 회계	주 택 사 업	3,221,077,209	595,631,550	1,107,176,999	638,414,313	879,854,527
	농공지구조성	76,310,370	48,020,320	15,264,540	12,005,080	1,020,430
	주민소득지원	1,146,765,000	115,438,389	1,707,611	961,269,000	68,350,000

### 3) 채 무

○ '99년도말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원금	이자	기일도래미지급액	
합	계	27,339,042	19,976,817	7,362,225	0
일 반 회 계		5,403,152	4,692,542	710,610	0
특별 회계	소 계	21,935,890	15,284,275	6,651,615	0
	상 수 도 사 업	18,668,797	13,398,564	5,270,223	0
	주 택 사 업	3,267,093	1,885,711	1,381,382	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98년도말 현재액 25,031,936천원에서
- 당해연도에 2,307,106천원이 늘어나
- 99년말 현재액은 27,339,042천원임.

#### 4) 공유재산

##### ○ 용도별 현황

(단위: 천원)

용도별	구분	'98년말 현재액	'99년말 현재액	증감(△)
	합	계	56,723,895	59,144,831
행정 재산	계	21,733,282	24,256,770	2,523,488
	공공용재산	13,989,838	14,467,502	477,664
	공용 재산	7,574,691	9,620,515	2,045,824
	기업용재산	168,753	168,753	0
보	존 재 산	0	0	0
잡	종 재 산	34,990,613	34,888,061	△102,552

가. 9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98년말 현재액 56,723,895천원에서 2,420,936천원이 증가한 59,144,831천원으로

- 토지 149,797,000㎡ 51,882,474천원
- 건물 34,550,000㎡ 7,252,951천원
- 기타 (기계,기구) 24건에 9,400천원임

####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99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956	수량	648	120	32	152	24	32	56	744
	금액	1,718,403	369,396	92,391	461,787	20,306	118,393	138,699	2,041,491

가. 9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8년말 현재액 1,718,403천원보다 323,088천원이 증가한 2,041,491천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461,78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등으로 138,699천원이 감소함.

##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99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1,120,354,494	△262,846,120	4,051,941,206	4,314,787,326	857,508,374
군	644,787,094	△95,838,828	3,157,281,278	3,253,120,106	548,948,266
읍 면	475,567,400	△167,007,292	894,659,928	1,061,667,220	308,560,108

가. 99년도말 현재액은 857,508,374원으로 98년도말 1,120,354,494원보다 262,846,120원이 감소함.

## 6. 검사결과

### (1) 총 평

- 99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 연찬과 정확한 결산의 의지 및 노력으로 계수과오는 2건에 불과하였고,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3%로 감소하였는바 감소의 주요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3,125백만원이 감소된 29,597백만원이 교부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음. 아울러 미수금은 전년대비 143%에 달하고 있으므로 미수금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 부적정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 세출예산 부당 불용처리

- 99년도 1회추경에 10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동굴개발계획 용역사업과 98년도 이월사업인 팔석정 안내판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사업비 부족(소요액 :약 200,000천원)을 이유로 동굴개발 계획사업 용역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나 동굴개발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며 분할 발주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불용처리 하였으며

- 2) 팔석정 안내판 설치사업은 모형변경 (아치형→자연석)에 따른 설계 및 변경 계약 미이행으로 도비보조금 5,000천원이 포함된 사업비 15,000천원을 전액을 불용처리 함으로서 예산의 사장 및 세수결손 초래

## ○ 관광홍보물 영상물 제작예산 부당 재배부

- 평창군의 우수한 관광조건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던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1) 당초 사업부서에서는 9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저 하였으나 용평면에서는 동일사업을 35,000천원에 추진하겠다고 예산배정을 요구 하였음.
  - 2) 평창군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용평면에 극한된 사업이 아닌 평창군의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인 만큼 평창군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용평면에 군비예산을 재배부 하는것은 부당함.

## ○ 신규사업비 최종추경 편성 부적정

- 평창군 양수기창고 진입로 포장공사(사업비 : 15,000천원) 및 봉평면 가로등 설치사업 (사업비 : 6,000천원)을 추진함에 있어
  - 1) 일반적으로 최종추경을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성격으로 특별한 사유 (국도비 지원사업)를 제외한 신규사업비의 편성은 억제하여야 하고
  - 2) 동절기(최종추경 '99. 12. 20)에 최종추경이 편성되는 관계로 토목 및 시멘트 공사등이 수반되는 사업은 대부분 추진이 불가능하고
  - 3)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평창군의 동절기(12월 평균기온)의 기온을 감안할 때 시멘트의 양생( 적은 10도~25도)등의 문제로 부실공사가 우려 되며

- 4) 특히 건설공사 중지명령 ('99. 12. 14)이후에 편성된 최종추경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함은 부적정함.

## ○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단일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1) 당초설계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등 부대비용을 합하여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는 36개월로 의회의 계속비사업 승인을 득한 상태로 추진되었음
  - 2) 따라서 본공사는 평창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사업보다 최우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 발주 억제등을 통하여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 3) 관련공무원의 사업완료 의지부족과 평창군의 빈약한 재정을 이유로 6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 4) 사업연장 기간내의 물가인상비용, 감리비 인상비용등으로 약20억이 추가 소요되므로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 군정홍보 매체 선정 부적정

- 99년도 군정홍보에 매체를 선정하여 총 22건에 82,600천원을 광고비로 지출하였으나
  - 1) 평창군의 홍보 , 특히 각종행사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행사의 규모 및 성격 (전국, 도, 군자체 행사), 관광객의 유치등을 고려한 홍보매체의 선정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도

2) 광고 효과가 거의 강원도에 국한된 홍보매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 MBC등)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할수 있는 대관령눈꽃축제, 통가리 보쌈, 산나물 축제등을 광고하는 것은 부적정함.

## ○ 명시이월 부적정

• 대화7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이월액 : 90,000천원)와 용평면사무소 진입로 정비사업(이월액 : 10,000천원)을 시행함에 있어

1)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보 이전에 소요예산액 사업부지의 선정,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2)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평면사무소 진입로 정비공사는 예산부족(부족액:10,000천원) 1회추경 예산에 편성된 대화7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부지확보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함은 부적정함

## ○ 세입.세출 예산집행과정의 부적정

1) 일부 읍.면에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의 반납처리 과정에서 반납액을 지출액으로 처리)

2) 세출예산의 피오지급금의 반납시 이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출계산서, 지급명령발행부, 출입금 통장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음.

# 지적사항 및 감사지 의견서



# 지 적 시 항 목 록

번호	제 목	번호	제 목
1	세입세출 결산서 계수 조정	11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관리 철저
2	금고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12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철저
3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 미징수	13	채권현재액 수정
4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부적정	14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부적정
5	지방세 미징수액 일소		
6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예산 부당 재배부		
7	입찰잔액 처리 부적정		
8	세출예산 부당 불용처리		
9	신규사업비 최종추경 편성 부적정		
10	군정홍보 매체 선정 부적정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호 : 1
- 제목 : 세입세출결산서 계수 수정
- 현황 : 별첨

- 문제점

## ○ 의견

세입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이월사업비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입결손액		비고
					수납총액①	과오납반환액②	실제수납액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일반회계	91,735,772,000 <del>91,195,772,000</del>	29,076,620,990	120,812,392,990 <del>120,212,392,990</del>	123,265,965,801	120,594,449,630	41,015,709	120,553,433,921	2,712,531,880	27,839,920	2,684,691,960	
지방세수입	10,247,120,000		10,247,120,000	12,204,281,675	10,658,187,615	28,995,650	10,629,191,965	1,575,089,710	11,660,800	1,563,428,910	
지방세	10,247,120,000		10,247,120,000	12,204,281,675	10,658,187,615	28,995,650	10,629,191,965	1,575,089,710	11,660,800	1,563,428,910	
보통세	9,213,838,000		9,213,838,000	10,399,189,352	9,648,128,242	27,051,710	9,621,076,532	778,112,820		778,112,820	
주민세	1,174,670,000		1,174,670,000	1,637,246,162	1,285,430,952	7,490,410	1,277,940,542	359,305,620		359,305,620	
재산세	757,810,000		757,810,000	832,667,260	764,019,010	2,357,140	761,661,875	71,005,390		71,005,390	
자동차세	1,817,238,000		1,817,238,000	2,064,821,120	1,799,575,910	3,400,700	1,796,175,210	268,645,910		268,645,910	
농지세	8,100,000		8,100,000	8,064,250	8,064,250		8,064,250				
도축세	32,020,000		32,020,000	33,500,700	33,500,700		33,500,700				
담배소비세	3,024,000,000		3,024,000,000	3,034,815,050	3,034,815,050		3,034,815,050				
종합토지세	2,400,000,000		2,400,000,000	2,788,074,810	2,722,722,370	13,803,460	2,708,918,910	79,155,900		79,155,900	
목적세	523,282,000		523,282,000	593,066,613	555,426,073	1,366,890	554,059,183	39,007,430		39,007,430	
도시계획세	216,002,000		216,002,000	255,151,890	229,997,680	1,366,890	228,630,790	26,521,100		26,521,100	
사업소세	307,280,000		307,280,000	337,914,723	325,428,393		325,428,393	12,486,330		12,486,330	
과년도수입	510,000,000		510,000,000	1,212,025,710	454,633,300	577,050	454,056,250	757,969,460	11,660,800	746,308,660	
과년도수입	510,000,000		510,000,000	1,212,025,710	454,633,300	577,050	454,056,250	757,969,460	11,660,800	746,308,660	
세외수입	18,457,001,000 <del>18,451,001,000</del>	29,076,620,990	47,527,621,990 <del>47,527,622,990</del>	49,153,713,626	48,016,740,515	469,059	48,016,271,456	1,137,442,170	16,179,120	1,121,263,050	
경상적세외수입	7,526,963,000		7,526,963,000	7,662,997,909	7,570,191,058	259,549	7,569,931,509	93,066,400	14,901,890	78,164,510	
재산임대수입	154,626,000		154,626,000	186,002,060	171,006,950	48,750	170,958,200	15,043,860		15,043,860	
국유재산임대료	25,732,000		25,732,000	33,345,400	28,710,850	43,560	28,667,290	4,678,110		4,678,110	
공유재산임대료	128,894,000		128,894,000	152,656,660	142,296,100	5,190	142,290,910	10,365,750		10,365,750	

과목	내역	예산액	이월사업비등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입액			미수입액	예산결정액	
						수입총액①	과오납입환액②	실제수입액①-②		예산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비		8,977,059,863	29,076,620,990	38,053,680,353	38,053,680,353		38,053,680,353				
순세계잉여금		8,465,368,363		8,465,368,363	8,465,368,363		8,465,368,363				
극고보조사용잔액		361,872,000		361,872,000	361,872,000		361,872,000				
도비보조사용잔액		149,819,000		149,819,000	149,819,000		149,819,000				
전년이월사업비			29,076,620,990	29,076,620,990	29,076,620,990		29,076,620,990				
기부금및기금수입											
기부금수입											
기금수입											
부담금		237,982,000		237,982,000	508,345,880		508,345,880				
일반부담금		237,982,000		237,982,000	508,345,880		508,345,880				
합수입		1,390,400,000		1,390,400,000	2,047,092,704	121,150	1,443,328,204	603,764,500		603,764,500	
비용품매각대		12,000,000		12,000,000	12,054,240		12,054,240				
변상금		20,000,000		20,000,000	24,959,870		19,285,210	5,674,660		5,674,660	
위약금		19,000,000		19,000,000	19,617,430		19,617,430				
과태료수입		127,808,000		127,808,000	297,738,160	120,000	155,285,830	142,452,330		142,452,330	
체납처분수입		8,000,000		8,000,000	9,515,670		9,296,070	219,600		219,600	
보상금수납금											
기타잡수입		1,203,592,000		1,203,592,000	1,683,207,334	1,150	1,227,789,424	455,417,910		455,417,910	
과년도수입		101,850,000		101,850,000	597,297,730	75,410	183,436,360	413,861,370	1,277,230	412,584,140	
과년도수입		101,850,000		101,850,000	597,297,730	75,410	183,436,360	413,861,370	1,277,230	412,584,140	
지방교부세		30,101,000,000		30,101,000,000	29,597,000,000		29,597,000,000				
지방교부세		30,101,000,000		30,101,000,000	29,597,000,000		29,597,000,000				
지방교부세		30,101,000,000		30,101,000,000	29,597,000,000		29,597,000,000				
법정교부세		30,101,000,000		30,101,000,000	29,597,000,000		29,597,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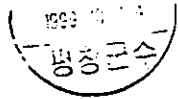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2
- 제 목 : 금고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현 황
  - 검사대상 : 41개소 (군금고 1, 지출대행 9, 수납대행 31)
  - 검사내용 : 군세 (세외수입포함) 수납및지출 전반
- 문제점
  - 세입금(수납금)의 지연이체
  - 일일결산시 수납액 착오기재로 통장과 일계표 상이
  - 수납의뢰서 및 일계표 보관관리 상태미흡
  - 지방세(군세, 도세) 금액 착오
  - 수납의뢰서 분실

## ○ 의 견

- 대행점 직원 순회집합교육 및 담당자 타부서 교체 지양



□ 主要指摘內容 및 措置計劃

○ 수납금 이체 지연

- 지방세 세입금을 수납한후 금고에 약정된 이체기일내에 수납금을 이체하여야하나 일부 수납대행점 지연이체








(지연이체 내역)

단위 : 원

수납대행점	이체금액	지연일수	변상금	비고
14개소	172,930,450		√139,007	
평창농협 미탄지소	11,991	64일	399	10.22
평창농협 방림지소	4,038,690	6일	4,510	10.30
평창축협 봉평지소	67,000	4일	139	10.26
봉평농협	571,870	1일	297	11.2
대화농협 본동지소	3,563,770	1일	1,853	10.27
대화농협	661,720	2일	688	11.2
평창축협 대화지소	511,139	21일	1,095	10.21
봉평농협 용평지소	13,840,410	5일	28,396	10.27
대관령원협 장평지소	18,783	10,032일	4,552	11.5
봉평농협 장평지소	1,250,744	9일	3,925	10.22
평창신협	13,012,450	20일	37,961	10.28
대관령원예농협	20,083	31일	102	10.27
도암농협	20,807,930	5일	48,530	10.27
진부농협	12,603,870	1일	6,560	11.3

※ 조치사항 : 변상금 부과 징수(고지서 수령즉시 군금고에 불입)

문서번호	재무13388~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99. 10.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담	당	과	장	부군수	군수
					
협	조	경리	대	오	정
					

# 99上半期金庫檢査結果

平 昌 郡  
(財 務 課)

## 99上半期金庫檢查結果

- 검사기간 : '99. 9.6 ~ '99. 9. 28(기간중10일)
- 검사대상 : 41개소(군금고1,지출대행점9, 수납대행점31)
- 결 사 자 : 징수담당외3명
- 검사내용 : 군세(세외수입포함)수납 및 지출사항

### □ 點檢結果

- '99상반기 우리군금고 세입.세출업무 제 이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검사대상 기관의 업무추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검사대상기관에서는 세입금(수납금)의 지연 이체, 일일결산시 수납액 착오기재로 통장과 일계표 상이, 수납의뢰서 및 일계표 보관 상태 미흡, 지방세(도세,군세)분류착오, 수납의뢰서분실등 금고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금고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게된것은 수납기관의 자체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원조정, 수납창고 직원의 빈번한 교체및 신규직원 배치, 관리자 관심미흡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장 시간 지속 될때에는 금고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한건에 대하여는 수납기관의 관리자 책임 하에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수시(분기별)로 금고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방지하여야함.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별 호** : 3쓰레기 봉투판매 대금 미징수

### ● 현 황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미 수 액	비 고
계	182,941,150	181,820,740	1,120,410	
평 창	50,731,390	50,727,520	3,870	
미 탄	4,602,310	4,304,430	297,880	
용 평	8,903,550	8,890,650	12,900	
진 부	59,628,270	58,827,510	800,760	
도 암	59,075,630	59,070,630	5,000	

### ● 문제점

- 납입고지서 발급과 동시 현품인계

## ○ 의 견

- 납입고지서 발급 불입후 현품 인계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변 호 : 4
- 제 목 :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의 부적정
- 현 황
  - 용전리 179-1 용전주유소
  - 광고물의 규격 2.6m × 2.8m × 2면
  - 수 량 : 1EA
  - 내 용 : LG 정유
  - 과태료 : 400,000원
- 문제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간 연장 허가 불이행
  -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하지 아니함

## ○ 의 견

- 법규 연찬 속지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검 사 자 의 전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5
- 제 목 : 지방세 미징수액 일소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별첨

## ○ 의 견 : 별첨

## 1. '99미수납액조서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미수납액		사 유 별										
	건수	금액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압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885	2,712,531	4,845	323,962	5,360	338,020	15,736	1,703,586	3,943	274,286	1	72,677	
구 분	지 방 세	26,814	1,575,089	4,437	239,028	5,042	331,706	13,392	730,069	3,943	274,286	-	-
	세외수입	3,071	1,137,442	408	84,934	318	6,314	2,344	973,517	-	-	1	72,677

## 2. '94년이전 체납액 조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2,659	1,031,520	
'90년 이전	9	21	
'90 년도	112	13,693	
'91 년도	259	21,785	
'92 년도	393	276,573	
'93 년도	598	65,680	
'94 년도	1,288	653,768	

## 3. 문제점

- 과년도분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 미이행
- 미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고취 및 재산 미압류

## 4. 의 견

- 년도 경과분 및 소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
-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경각심 고취
- 압류처분후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납세의식 고취
- 지속적인 자진납부 유도(납부 독촉장 발부등)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6

● 제 목 :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예산 부당 재배부

● 현 황

- 평창군의 우수한 관광조건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확보한 관광영상물 제작예산 35,000천원을 용평면에 재배부

● 문제점

- 사업의 성격상 평창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며 소요예산액을 90,000천원에서 35,000천원으로 감액 추진하므로서 홍보 영상물의 줄속 제작이 우려됨

## ○ 의 견

- 본 사업은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
- 소요예산을 정확히 재산정 하는등 홍보영상물이 줄속 제작 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 강구후 추진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7
- 제 목 : 입찰잔액처리 부적정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별첨

## ○ 의 견 : 별첨

## ○ 현 황

- 면은-진조간 군도확포장공사 (예산액 : 700,000천원)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산액의 98%에 낙찰(계약금액 :687,401천원)되어 12,599천원의 입찰잔액이 발생
- 교량 기초부 암반노출로 암반변경(309m<sup>3</sup>)을 사유로 입찰잔액 12,599천원을 1차 설계 변경을 통해 전액 지출

## ○ 문제점

- 설계변경이 지하암반으로 사전예측이 불가능 하다고 하나 암반량이 309m<sup>3</sup>으로 예산잔액과 일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불가

## ○ 의 견

- 설계변경 암반량이 309m<sup>3</sup>으로 사업비 잔액 12,599천원 일치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잔액을 사용하기 위한 부당한 설계변경 조치로 판단됨
- 설계변경이 필요할시에는 정확한 변경량을 산정하여 사업비 지출
  - ※ 부족시에는 예산추가 확보등 조치강구
-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입찰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8

● 제 목 : 세출예산 부당 불용처리

● 현 황

- 동굴개발계획 용역비 100,000천원과 팔석정 안내판 설치 사업비 15,000천원 부당 불용처리

● 문제점

- 동굴개발계획 용역사업과 팔석정 안내판 설치사업은 군에서 추후라도 추진할 사업으로 예산이 전무

## ○ 의 견

- 향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9

● 제 목 : 신규사업비 최종추경 편성 부적정

● 현 황

- 평창군 양수기창고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15,000천원과 봉평면 가로등 설치사업비 6,000천원을 최종추경(3회) 추경에 예산편성

● 문제점

- 최종추경은 동절기에 편성되므로 사업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공사 시행시 부실공사

## ○ 의 견

- 최종추경보다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시행

- 최종추경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신규사업비의 편성은 가능한한 억제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10
- 제 목 : 군정홍보 매체 선정 부적정
- 현 황 : 별첨

### ● 문제점

-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할수 있는 대관령 눈꽃축제, 통가리보쌈, 산나물 축제등을 지방지에 광고하여 많은 관광객의 유치실패로 행사효과 반감.

## ○ 의 견

-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할수 있는 축제등을 인접시,도의 주민이 알수 있도록 중앙지에 게재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최대한의 행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1
- 제 목 :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관리 철저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변동금리 적용대상 기채는 가급적 조기 상환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 최소화
  - 추후 연차적인 투자실시로 일시적인 대규모 기채 발행 억제  
(노후관 교체등의 경우 예산 사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다가 누수율 50 - 60%이상 되어서야 일시적으로 사업추진)
  - 추진중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억제

## ○ 의견

-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채(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한 관리 지난  
⇒금리 변동 예측 불허로 인한 예산년성 및 적기 상환 곤란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지방채 발행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자체 자원조달 한계

#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관리 현황

## □채무별현황(2000년)

(단위: 천원)

구분 재원별	1/4분기 현재 채무잔액			상환조건	이율	비 고
	계	원금	이자			
계	18,389,956	12,776,964	5,612,992			
지역개발 기금(8건)	5,964,938	4,316,250	1,648,688	90년이전:2년거치 8년균분상환 92년이후:2년거치10년균분상환	'97년이전:7.0% '98년이후:6.5%	
토특융자금 (4건)	1,423,847	1,146,800	277,04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5.0%	
채특융자금 (2건)	9,411,579	6,000,000	3,411,579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96년이전:6.1% '97년이후:7.1%	
환특융자금 (1건)	1,447,521	1,200,000	247,52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2.5%	
농어촌개발 기금(2건)	142,071	113,914	28,15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4.5% (변동금리적용)	

(※ '99세입세출결산서상 채무금액은 18,668,797천원(원금-13,398,564천원, 이자-5,270,223천원)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2
- 제 목 : 국민주택 용자금 관리 철저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국민주택 용자금에 대한 상환잔액이 '99년말 현재 3,267백만원이나 상환불가능 주택을 포함한 연체이자가 536백만원으로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율이 17%에 달하므로 연체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 건축주 행불, 경매, 건축물의 노후등으로 상환 불가능 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 의 견

- 용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태만하여 시효소멸이 되지않도록 용자금 회수및 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 용자기간 장기(20년) 저리자금이나 용자후 건축주의 행불,경매,건축물의 노후등으로 상환 불가능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체등 악성 채무에 대하여는 조기상환 대책을, 주택용자금 대부자들로부터는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임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현황

'99 국민주택융자금 상환현황

단위: 원

구분 년도별	99 상환액		
	계	원 금	이 자
계	280,594,602	148,025,372	132,569,410
77국민			
78국민	131,720	108,800	22,920
80수해	230,520	192,520	38,180
82수해	684,460	565,340	119,120
82국민	25,436,660	16,748,290	8,688,370
83태풍	1,318,850	1,001,410	317,440
83국민	21,417,711	12,063,572	9,354,139
84국민	63,204,917	30,247,620	32,957,297
84수해	3,312,750	2,939,230	373,520
85국민	102,278,700	52,855,550	49,423,150
86국민	62,578,314	31,303,040	31,275,274

'99 이후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

단위:천원

당 해 년 도 말 현 제 액		
계	원 금	이 자
3,267,093	1,885,711	1,381,382

주택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징수할 채권액

단위:천원

당 해 년 도 말 현 제 액				
계	이행기간도래액		이행기간미도래액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3,221,077	595,632	1,107,177	638,414	879,854

# 검 사 자 의 전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3

● 제 목 : 채권 현재액 수정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채권현재액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당해년도 발생액(이행기간도래, 미도래액) 637,337천원은 국민주택 융자금의 징수 및 상환을 위하여 예산서상 편성된 징수 결정액으로, 타기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차입되는 자금이 아니므로 당해년도 채권발생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임.

## ○ 의 견

- 전년도말 현재액(채권)에서 당해년도 소멸액(상환액)을 제외한 후 당해년도 현재액으로 작성하여야 적합하나 당해년도 예산서상 편성된 금액을 당해년도 채권발생액으로 잘못 계상하여 오류가 발생하므로 수정함이 타당함.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4

● 제 목 :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부적정

● 현 황 :

- 읍.면에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의 반납처리 과정에서 반납액을 지출액으로 처리
- 세출예산의 과오지급금의 반납시 이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지출액으로 처리시 세출예산의 2회지출로 되어 예산총액 대비 지출액이 많아지게 되고
- 과오, 과다 지급금의 반납금을 세입으로 처리하면 세입금의 증가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등 세입세출 결산액 증가등의 문란사례 유발.

## ○ 의 견

- 실과소 및 읍면 회계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수검결과 지적사항없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한 우수공무원 격려(명단: 별첨)

## 수검결과 우수 공무원

소속(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비 고
재 무 과	지방행정8급	오 정 희	
평 창 읍	지방행정8급	이 숙 자	
진 부 면	지방농업8급	김 경 애	